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2024. 1.

양형위원회

I. 개요

- 의견조회 및 공개 대상인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등을 소개하여, 이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연혁
 - 2012. 6. 18. 설정, 2012. 7. 1. 시행
 - 2017. 4. 10. 수정, 2017. 5. 15. 시행 → 영업비밀 침해행위(대유형 3)형량범위 상향
 - 그 후 수정은 합의 관련 양형인자 수정 등 양형기준 전반에 걸친 정비(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 수정 배경
 - 구성요건 신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국가핵심기술 국외 침해): 2019. 8. 20. 신설, 2020. 2. 21. 시행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제2항(전략기술 국외침해), 제3항(전략기술 국내침해): 2022. 2. 3. 제정, 2022. 8. 4. 시행

- 법정형 상향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침해), 제2항(영업비밀 국내침해) 법정형 상향: 2019. 1. 8. 개정, 2019. 7. 9. 시행
-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3항(산업기술 국내침해) 법정형 상향: 2019. 8. 20. 개정, 2020. 2. 21. 시행

- 수정 경과

- 2023. 6. 12. 제125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제9기 양형위원회 추진 업무로 의결
- 2023. 8. 8. 제126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 2023. 11. 10. 제128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권고 형량범위)
- 2024. 1. 8. 제129차 및 2024. 1. 18. 제129-1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수정안 의결
- 2024. 1. ~ 2024. 2.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공개
- 2024. 2. 16.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예정
- 2024. 3.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의견 검토 및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

II.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1. 고려 사항

- 범죄의 발생 빈도와 그 사회적 영향 정도, 법정형과 죄질, 국민의 법 감정과 국민적인 관심도, 범죄의 성격상 양형기준 설정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선고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행위 유형, 법정형과 죄질,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범죄,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사범죄를 참조하여 양형기준 설정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는 설정 대상으로 포함

2. 설정 범위

가. 개요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¹⁾ 양형기준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일부에 대해 설정되어 있었음
- 기존 설정 범죄에 더하여, 아래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하기로 함

나. 설정 범위에 새로이 포함된 범죄

-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침해(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 2019. 8. 20. 개정으로 신설(2020. 2. 21. 시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15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으로 법정형 중합

1) 범죄군 명칭 수정 경과는 7~8쪽 참조

-
- 국가핵심기술 국외 침해로 발생하는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규정을 둔 입법취지 존중
 - 선고사례가 적으나, 사회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반영 필요
- 전략기술 국외·국내 침해(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따로 유형화하여 그 국내·국외 침해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함
 -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2022. 2. 3. 제정 2022. 8. 4. 시행), 양형 사례 없음
 - 산업기술보호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구성요건이 유사함
 - 설정 범위에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침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와 유사한 구조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도 규범적으로 설정 가능함
 - 2042. 12. 31.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에 해당하지만, 약 20년이 남아 있고, 상시법 전환 가능성도 있어 양형기준 설정에 지장을 주지 않음
- 방위산업기술 국내·국외 침해(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누설·도용(같은 조 제4항)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방산기술보호법’) 위반사건은 양형 사례 없음
-

- 산업기술보호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구성요건도 유사함 ⇨ 규범적 설정 가능함
- 저작권 침해(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2, 제3호의5, 제3호의6, 제3호의7)
 - 기존 양형기준에는 위 범죄들(음영)이 설정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대유형 2 제2유형(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의 다른 범죄(비음영)와 법적 성격 및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설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구성요건	적용법조
저작인격권 침해행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부정등록행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93조) 침해행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
복제·전송자의 정보 청구 목적 외 용도 사용행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2
업 또는 영리 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등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3
업 또는 영리 목적 권리관리정보 삭제 행위 등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4
암호화된 방송 신호 복호화 목적 장치 제조 행위 등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5
불법복제물에 부착하기 위한 라벨 위조 행위 등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6
방송전 신호 송신행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7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 카목 4]

-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의 부정경쟁행위가 대유형 4로 포함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
 - 개정을 통해 기존과 달라진 부분: ‘자목(형태 모방 행위), 카목 4(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목적 기술·서비스·장치 제공 등)’ 이 처벌 대상에 포함 → 기존에 처벌 대상이었던 부정경쟁행위와 가벌성에 크게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포함하는 것이 타당

(이하 여백)

Ⅲ.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유형 분류

1. 유형 분류의 일반 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 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은 공통되어야 함

2. 유형 분류안

가. 논의의 전제

- ▣ 유사한 특성을 가진 범죄를 같은 대유형으로 묶음 ⇨ 양형인자 공통
- ▣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를 같은 소유형으로 묶음 ⇨ 형량범위 공통

나. 유형 분류안 설명

- ▣ 기술침해범죄를 별도의 범죄군으로 신설하지 않고,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내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라는 독립된 유형을 신설하면서 범죄군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으로 수정하기로 함
- 기술침해범죄에 관하여 별도의 범죄군을 신설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범죄가 2개의 범죄군으로 흩어지게 되어 적절치 않음
- 영업비밀 침해범죄 및 산업기술 등 침해범죄도 다른 지식재산권범죄와 동일한 지식재산법리가 적용되거나 또는 준용됨

-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를 하나의 범죄군 틀 내에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적용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음. 반면 지식재산권과 별도로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라는 새로운 범죄군을 신설할 경우 해당 범죄군을 찾는 데 혼선을 야기할 우려 있음
 -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 사건수가 별도 범죄군을 신설할 정도로 많지 않음
 - 따라서 별도 범죄군을 신설하지는 않되, 지식재산권범죄 내에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되어 있던 영업비밀 침해범죄에서 기술침해범죄를 분리하여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라는 독립된 유형을 신설하기로 함
- ▣ 기존의 유형 분류를 유지하되 대유형 4를 추가하고, 대유형 4의 소유형은 법률 규정, 죄질과 법정형,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

01¹ 등록권리 침해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등록권리 침해행위			
02¹ 저작권 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저작재산권 침해			
2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03¹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2	국외침해			

04¹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설·도용			
2	국내침해			
3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4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05¹ 부정경쟁 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경쟁행위			

▣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대유형 4)의 소유형 분류

● 제1유형(누설·도용)

구성요건	적용법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6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4항

● 제2유형(국내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3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2항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3항

● 제3유형(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1항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략기술 수출 등/전략기술 외국 사용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외인수·합병 등/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 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등/전략기술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공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2항

● 제4유형(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국가핵심기술의 외국 유출·침해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 취득 등/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 유출 등/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전략기술 취득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 피해액 또는 피해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는 하지 않기로 결정

- 피해액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예: 횡령·배임범죄, 사기범죄) 엄격하고 세밀한 피해액 심리가 필요한데, 피해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손해액 심리가 필수적인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

상(민사) 사건에서도, 손해액을 정밀하게 산출하기 곤란하다는 한계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특허법 제128조 제7항, 저작권법 제126조 등 다수)을 두고 있고, 상당수의 사안에서 위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임

- 지식재산 사건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도 사건의 심리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액을 세밀하게 심리해야 하는 경우 양형심리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형사재판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 피해 정도는 양형인자로 반영하기로 함(뒤에서 설명)

(이하 여백)

IV. 지식재산 · 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1. 고려사항

▣ 권고 형량범위 설정 방식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정형이 동일하고 성격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함
- 다만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죄질이 나쁜 유형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함

2. 등록권리 침해행위(대유형 1)

가. 유형의 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²⁾
특허법 제225조 제1항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7년↓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상표법 제230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	

나. 형량 분포³⁾

2) 자유형에 한함. 이하 같음

3)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 선고된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대유형 1(등록권리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사건

	형량(월)														전체	평균 (월)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0	24	36		
수	1	29	4	109	59	99	89	5	1	2	44	1	10	1	454	9.97
비율	0.2	6.4	0.9	24.0	13.0	21.8	19.6	1.1	0.2	0.4	9.7	0.2	2.2	0.2	100.0	

다. 검토

- 다음과 같이 형량범위를 수정함이 타당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등록권리 침해행위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4년

- 법정형 변경 無
- 전체 사건이 대부분 권고 형량범위 안에 고르게 분포
- 그러나 가중영역의 상한이 법정형이 더 낮은 저작권 침해행위(대 유형 2) 저작재산권 침해(제1유형)의 가중영역(1년 - 3년)과 같아 불균형이 있고, 기술보호 수단으로 기능하는 특허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위해, 가중영역을 ‘1년6월 - 3년’ 에서 ‘1년6월 - 4년’ 으로 상향함이 타당

3. 저작권 침해행위(대유형 2)

가. 유형의 정의

유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 권리 제외) 등 침해행위	5↓
2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1. 저작인격권 침해행위 2. 부정등록행위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93조) 침해행위	3↓

단일 및 동종경합범(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공)

유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3의2. 복제·전송자의 정보 청구 목적 외 용도 사용행위 3의3. 업 또는 영리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등 3의4. 업 또는 영리목적 권리관리정보 삭제 행위 등 3의5. 암호화된 방송 신호 복호화 목적 장치 제조 행위 등 3의6. 불법복제물에 부착하기 위한 라벨 위조 행위 등 3의7. 방송전 신호 송신행위 4.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나. 형량 분포⁴⁾

1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 (월)
	3	4	5	6	8	9	10	12	14	18	24	32	36			
수	2	8	1	33	21	0	9	7	1	4	3	0	1	90	8.63	
비율	2.2	8.9	1.1	36.7	23.3	0.0	10.0	7.8	1.1	4.4	3.3	0.0	1.1	100.0		

2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 (월)
	3	4	5	6	8	9	10	12	14	18	24	32	36			
수	0	2	0	2	1	1	3	0	0	0	1	1	0	11	11.18	
비율	0.0	18.2	0.0	18.2	9.1	9.1	27.3	0.0	0.0	0.0	9.1	9.1	0.0	100.0		

다. 검토(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저작권재산권 침해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 법정형 변경 無
- 전체 사건 대부분 권고 형량범위 안에 고르게 분포
- 2유형 중 새로 설정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는 양형 사례가 없어 기존 형량범위 수정의 필요성 ×

4)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 선고된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대유형 2(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사건 단 일 및 동종경합범(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공)

4. 영업비밀 침해행위(대유형 3)

가. 유형의 정의

유형	명칭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국내침해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영업비밀 지정 장소 외 무단 유출/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나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3. 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 취득·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10↓
2	국외침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영업비밀 지정 장소 외 무단 유출/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나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3. 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 취득·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15↓

나. 형량 분포5)

1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월)
		4	5	6	8	10	12	16	18	24		
	수	4	1	15	11	5	22	1	6	2	67	10.22
	비율	6.0	1.5	22.4	16.4	7.5	32.8	1.5	9.0	3.0	100.0	
2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월)
		4	5	6	8	10	12	16	18	24		
	수	1	0	0	1	1	5	0	0	0	8	10.25
	비율	12.5	0.0	0.0	12.5	12.5	62.5	0.0	0.0	0.0	100.0	

다. 검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10월 6월 - 1년6월	8월 - 2년 10월 - 3년	1년 - 4년 2년 - 5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3년	1년 - 3년6월 1년6월 - 5년	2년 - 6년 3년 - 8년

5)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 선고된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대유형 3(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사건 단일 및 동종경합범(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공)

- 2017. 5. 양형기준 수정 이후 영업비밀 침해 근절·재발 방지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2019. 1.)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징역 5년↓ → 징역 10년↓/징역 10년↓ → 징역 15년↓)되었으므로, 형량범위 상향 필요

- 법정형 유사 범죄 권고 형량(제1유형)

- 도주·범인은닉범죄(법정형 도주원조 10년↓, 간수자의 도주원조 1년~10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	도주원조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5년

- 성매매범죄(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법정형 1년~10년)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 법정형 유사 범죄 권고 형량(제2유형)

- 공갈범죄(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법정형 상습특수공갈 1년~15년, 누범공갈 2년~20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누범공갈·상습특수공갈	10월 - 2년6월	1년4월 - 4년	3년 - 6년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법정형 2년~15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3년 - 6년

- 세부 고려사항

- 법정형 유사범죄와의 균형, 영업비밀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점 등을 고려하되, 영업비밀 침해범죄 양형에 대한 규범적 상향 필요성 등에 비추어 법정형 유사 범죄 권고 형량보다 높게 설정함

5.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대유형 4) - 신설

가. 유형의 정의

유형	명칭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누설·도용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6항	5↓
		직무상 알게 된 방위산업기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4항	7↓
2	국내침해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3항	10↓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2항	10↓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3항	15↓
3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15↓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1항	20↓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략기술 수출 등/전략기술 외국 사용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외인수·합병 등/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 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등/전략기술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공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2항	20↓
4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국가핵심기술의 외국 유출·침해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3↑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 취득 등/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 유출 등/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전략기술 취득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5↑

나. 형량 분포

-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신고 사건⁶⁾만 있고, 방산기술보호법위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위반 사건은 신고 사례 없음

단위: 명, %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월)	
	2	3	4	5	6	8	9	10	12	14	15	16	18	20	24	32	36			
산업기술보호 법위반	수	0	0	0	0	2	0	0	1	2	0	0	0	1	0	0	0	0	6	10.67
	비율	0.0	0.0	0.0	0.0	33.3	0.0	0.0	16.7	33.3	0.0	0.0	0.0	16.7	0.0	0.0	0.0	0.0	100.0	

다. 검토

▣ 4-1유형(누설·도용)

- 권고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설·도용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양형사례 없음
- 법정형(5년↓) 동일한 유사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와 형평 고려
 - 업무방해범죄(법정형 5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업무방해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정보통신망 침해범죄)(법정형 5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정보통신망 침입 등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4-2유형(국내침해)

6)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 신고된 사건 중 죄명이 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단일 및 동종경합범 사건(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공)

● 권고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국내침해	8월 - 2년	1년 - 4년	2년6월 - 6년

● 선고 사례(이종경합 포함)

순번	사건번호	범죄사실	선고	비고
1	서울중앙 2020고단****	회사 내부자가 경쟁업체와 공모하여 기술 누설·활용	1년6월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경합
			1년	
			10월/집유 2년	
			8월/집유 2년	
2	수원 2021고단****	퇴사하면서 프로그램 정보 가지고 나와 누설 후 경쟁사 입사하여 유사기술 개발	1년6월	업무상배임 경합
			1년/집유 2년	
3	수원 2021고단****	해외이민 후 경쟁업체 취업 계획으로 산업기술 유출	1년6월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경합

- 법정형 10년↓으로 영업비밀 국내침해(3-1유형)와 같으나, 국가경쟁력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양형 강화 필요성을 반영하여 영업비밀 국내침해 및 선고 사례(최고 형량 1년 6개월)보다 형량범위 상향

■ 4-3유형(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 권고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1년 - 3년6월	2년 - 6년	4년 - 10년

● 선고 사례(이종경합 포함)

사건번호	범죄사실	선고	비고
수원 2022고합**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하여 중국에 판매하고 관련 기술 유출	4년	영업비밀 침해 경합
		2년6월	
		2년6월/집유 3년	

- 영업비밀 국외침해(3-2유형)와 징역형 법정형(15년↓)이 같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영업비밀 국내침해 및 선고 사례보다 형량 범위 상향

▣ 4-4유형(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 권고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2년 - 5년	3년 - 7년	5년 - 12년

- 양형사례 없음
- 법정형 동일·유사 범죄 권고 형량
 - 절도범죄(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법정형 3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 공갈범죄(일반공갈)(법정형 3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6월	3년 - 7년	5년 - 9년

- 세부 고려사항
 - 법정형 동일 범죄와의 균형을 고려하되,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고, 산업기술 등 침해범죄 유형 중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규범적으로 높은 형량범위 제시

6. 부정경쟁행위(대유형 5)

가. 유형의 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아목, 차목, 카목 1)부터 3)까지, 타목 및 과목은 제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3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조를 위반하여 과리협약 당사국 등의 휘장·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나. 형량 분포⁷⁾

유형		형량(월)									
		2	3	4	5	6	7	8	10	12	
부정경쟁행위	수	1	0	0	0	4	0	0	0	1	
	비율	16.7	0.0	0.0	0.0	66.7	0.0	0.0	0.0	16.7	
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
		14	15	16	18	20	24	36			
부정경쟁행위	수	0	0	0	0	0	0	0	6	6.33	
	비율	0.0	0.0	0.0	0.0	0.0	0.0	0.0	100.0		

다. 검토(현행 유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경쟁행위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 법정형 변경 無
- 전체 사건 대부분 권고 형량범위 안에 고르게 분포

7)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 선고된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대유형 4(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단일 및 동종경합범 사건(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공)

-
- 특별히 형량범위 상향 요구, 권고 형량범위를 수정할 만한 사정변경 없음

(이하 여백)

V. 지식재산 · 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1. 양형인자 중 수정 부분

가. 특별가중인자

▣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지식재산 · 기술침해 사건에서는 피해기술 등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액의 심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특허 등 개발에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경우 침해자가 해당 연구개발비 상당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기업의 투자 · 노력에 대한 부정취득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예시규정을 추가하여 양형인자에 반영하기로 함
-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수정함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침해행위 ·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침해자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권리자(피해자)의 총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오로지 특정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한 경우
- 권리자(피해자)의 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치명적 경영상태 악화 등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당해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 · 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또는 유출인 경우
-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으로 수정(대유형 3)

-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은 대유형 4(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로 대유형이 신설되면서 분리되었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은 인자에서 삭제
-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이라는 특별가중인자는 유지
 - 경제질서 교란 또는 국가 산업경쟁력 약화 등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가 개인 또는 기업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면(‘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거듭 가중할 수 있음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를 정의규정에 추가
 - 영업비밀(기술)은 거래처, 파견직원 등에 의해서도 유출되는데, 현행 정의규정이 이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계약상 의무를 위배하여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 가중하는 것이 타당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를 정의규정에 추가
 - 열거된 사유를 통해 포섭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반영할 필요

●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수정함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피고인이 권리자(피해자)의 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도급 등의 형태로 권리자(피해자)의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권리자(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자인 경우
- 피고인이 현재의 권리자(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양도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후 유출 또는 사용한 경우
-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특별감경인자

▣ 자수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로 수정

- 범죄 가담자 협조가 있는 경우 범죄혐의 입증이 용이하므로 유인책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 기관 의견 반영
- 암수 범죄 적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필요성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횡령·배임, 사기 등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행위인자로서,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결과불법이 낮은 경우를 의미함
- 기술침해범죄의 특성상 대부분 자료들이 디지털화 되어 복제가 용

이하므로, 정의규정에서 유출된 정보가 반환·폐기된 경우라는 것을 명확히 함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외부로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이 권리자(피해자)에게 반환·폐기되어, 권리자(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 공탁 관련 양형인자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에서 ‘(공탁 포함)’ 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

-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 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양형인자에서 위 문구를 삭제하기로 함

▣ ‘실질적 피해 회복’ 의 정의규정을 수정

- 공탁이 독자적인 양형인자가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면서,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하도록 함

- 정의규정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2.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대유형 4)의 양형인자

가. 개요

- **현행 양형기준 대유형 3(영업비밀 침해행위)에서 산업기술을 규율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양형인자표 안을 작성**
 - 대유형 3(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인자를 차용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명칭 중 ‘영업비밀’ 을 ‘기술’ 로 수정
 - [양형인자의 정의] 내용에 있는 ‘산업기술’ 은 ‘산업기술 등’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을 통칭)으로 수정
- **아래에서는 대유형 3(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인자와 달리 정할 부분을 위주로 검토**

나. 양형인자 검토

- **특별가중인자로 ‘전략기술인 경우(4유형)’ 설정**
 - 4-4유형인 전략기술 국외침해(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법정형 5년↑)의 경우에는 전략기술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으로써 전략기술 국외침해 형량범위의 시작 구간이 ‘5년 - 12년’ 이 되도록 함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을 일반감경인자로 설정**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⁸⁾

구분	보호법의	특별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일반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1-1	개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2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1	개인 및 국가·사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2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국가·사회	-	-

구분	범죄군
1-1	살인 / 강도 / 횡령·배임 / 약취·유인·인신매매 / 사기 / 절도 / 지식재산권 / 폭력 / 교통 / 공갈 / 체포·감금·유기·학대 / 장물/ 권리행사방해 / 업무방해 (1유형) / 손괴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1유형) / 명예훼손 / 주거침입 / 배임수증재
1-2	성범죄 / 성매매 (1-가 유형) / 디지털 성범죄 (2, 3, 4, 5유형) / 아동학대
2-1	선거 (3유형) / 방화 / 업무방해 (2유형) / 근로기준법 위반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2유형)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 (2, 3유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2유형)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2-2	식품·보건 (2, 3유형) / 성매매 (2-나 유형) / 도주·범인은닉 (1-2유형) / 디지털 성범죄 (1유형) / 위증 / 무고 / 공무집행방해
3	뇌물 / 공문서 / 사문서 / 식품·보건 (1유형) / 마약 / 증권·금융 / 선거 (1, 2, 4유형) / 조세 / 변호사법 위반 / 성매매 (나머지 유형) / 사행성·게임물 / 석유사업법 위반 / 도주·범인은닉 (나머지 유형)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 (1유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1유형)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환경

- 개인 및 국가·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보호 정도 등 각 범죄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2-1군(개인적 법익도 상당 정도 보호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 예: 업무방해범죄 중 경매·입찰방해,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중

8) 2021. 8. 17. 제111차 양형위원회, 2021. 10. 8. 제112차 양형위원회 의결 내용

채권추심법위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 또는 2-2군(나머지, 예: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위증, 무고, 공무집행방해)과 같이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규정함

- 산업기술 등 침해범죄는 개인 및 국가·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국가·사회적 법익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2-2군에 해당

-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탁 포함)’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정의규정을 둠

■ 일반가중인자로 ‘방위산업기술인 경우(1, 3유형)’ 및 ‘전략기술인 경우(2, 3유형)’ 설정

- 제1, 2, 3유형의 방위산업기술과 전략기술의 경우, 산업기술의 경우보다 법정형이 높으나 양형 실무례가 없어 별도 구간을 나누거나 형량범위를 달리할 근거가 부족하여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함

3. 양형인자표

가. 등록권리 침해행위(대유형 1)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저작권 침해행위(대유형 2)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비영리 목적 이용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형 인 자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대유형 3)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라.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대유형 4)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전략기술인 경우(4유형)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기술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된 기술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취득·사용한 기술을 누설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 방위산업기술인 경우(1, 3유형) ○ 전략기술인 경우(2, 3유형)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마. 부정경쟁행위(대유형 5)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형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여백)

VI. 지식재산 · 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

1. 개요

가. 유형 분리

- 기존 양형기준은 모든 유형의 집행유예 기준을 하나의 표에 통합하였지만, 대유형 3(영업비밀 침해행위), 대유형 4(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는 다른 유형과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상이하어 별도 표를 작성할 필요 → ① 대유형 1, 2, 5에 대한 기준, ② 대유형 3에 대한 기준, ③ 대유형 4에 대한 기준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
- 양형인자를 위상에 따라 주요/일반 참작사유로 구성

나. 형사처벌 전력 없음(영업비밀 침해행위,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제외

- 영업비밀침해 및 기술침해범죄는 대부분 초범에 의해 발생하고, 통계상으로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유의미한 집행유예 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삭제
- 횡령 · 배임범죄, 증권범죄 등에서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을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 참작

다. 기술침해범죄를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반영

-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중 제1유형(누설 · 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제2유형(국내침해), 제3, 4유형(국외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반영

라. 대유형 3(영업비밀 침해행위), 대유형 4(산업기술 등 침해행위)에서는 ‘생계형 범죄’ 를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제외함

2. 집행유예 기준표

가. 등록권리 침해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 피해 미변제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비영리적 목적의 범행 ○ 지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도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 피해 미변제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지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도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집행유예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 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제2, 3, 4유형) ○ 피해 미변제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